

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

일괄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1011호

나. 발 의 자 : 박승진 의원(찬성자 26명)

다. 발의일자 : 2023년 8월 14일

라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“서울지방경찰청” 및 “서울지방경찰청장” 이 “서울특별시경찰청” 및 “서울특별시경찰청장” 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 기존 사용하던 명칭인 “서울지방경찰청” 은 “서울특별시경찰청” 으로 “서울지방경찰청장” 은 “서울특별시경찰청장” 등으로 변경함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가. 조례안의 개요

-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의 명칭 변경 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고자 발의됨.

나.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

-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행정을 자치경찰이 담당함으로써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,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기존의 「경찰법」을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전면 개정한바 있음(2020. 12. 22.개정, 2021. 1. 1.시행).
- 동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해,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였는바 국가경찰은 범죄예방 및 수사, 대간첩·대테러 작전, 정보수집 등을 담당하고, 자치경찰은 지역의 생활안전·교통·경비·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.
- 한편 기존의 「경찰법」은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,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에는 시·도에 시·도경찰청을 두도록 규정됨에 따라, 전국 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일제히 ‘지방’ 이 삭제됨(2021).

〈 경찰청 명칭 변경 관련 법률 조항 〉

경찰법	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
<p>제2조(국가경찰의 조직)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.</p> <p>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,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.</u> 이 경우 인구, 행정구역, 면적, 지리적 특성,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<u>시·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.</u></p>	<p>제12조(경찰의 조직)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.</p> <p>제13조(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)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시·도경찰청을 두고, 시·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.</u> 이 경우 인구, 행정구역, 면적, 지리적 특성,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<u>시·도에 2개의 시·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.</u></p>

- 이에 동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등 12개 조례에 규정된 “서울지방경찰청” 및 “서울지방경찰청장”이라는 용어를 “서울특별시경찰청” 및 “서울특별시경찰청장”으로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소연	02-2180-8065